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제출연월일 : 2004. 11.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① 제안 사유

- 신규 사무의 발생, 도청의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시청 부서의 기능과 불합리하게 추진되어온 업무에 대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 도와 시의 부서간 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 부서간 기능에 부합하는 사무분장 및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조직을 능동적,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과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공포 (2004. 3.11)
 -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와 정원신설

② 주요 골자

-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가 단순하게 교육행정의 협조차원이 아닌 기능별 지원업무로 세분화·다양화 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중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등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
 -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신설
- 건설과 소관업무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처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등 옥외광고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의 기능과 연관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과로 이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자치행정과)중 제8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정·추진
10. 지방행정 통신에 관한 제반사항
11.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건설과)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점용허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과)중 제15호 내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
16. 공동주택 유지관리
17. 재건축사업 추진
18. 국민주택융자금 부과·징수
19.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 재해주택 지원
2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
22. 노후 빈집 정비
23. 기타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24. 청초호유원지 관리
25.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토이용건설 계획수립 및 관리
27.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지방행정 통신에 관한 제반사항 9.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자치행정과)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조정·추진 10. 지방행정 통신에 관한 제반사항 11.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2.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옥외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16조(건설과)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도로점용허가,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공동주택 유지관리 16. 재건축사업 추진 17. 국민주택융자금 부과·징수 1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19. 재해주택 지원 20. 노후 빈집 정비 21. 기타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22. 청초호유원지 관리 23.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토이용건설 계획수립 및 관리 25.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제17조(도시과) - - - - - -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전반 16. 공동주택 유지관리 17. 재건축사업 추진 18. 국민주택융자금 부과·징수 19.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0. 재해주택 지원 2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 22. 노후 빈집 정비 23. 기타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24. 청초호유원지 관리 25.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토이용건설 계획수립 및 관리 27.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지역경제과)중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호과)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각로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사항 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역경제과)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u>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사항 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소각로 및 음식물처리공장 시설,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u> 14. (생략)	제15조(환경보호과)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소각로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관리·운영</u> 14. (현행과 같음)